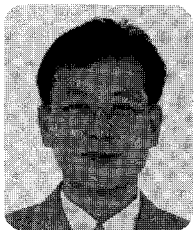


양돈농가가 신청할 수 있는 정책자금

돼지콜레라 발생 등 양돈농가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FTA 등 대내외 농업환경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요즘의 농업관련 전문가들의 화두는 자유경쟁체제 하에서 경쟁력 있는 농업 육성이라 할 것이다. 정책의 방향도 가계농 중심에서 기업농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보조금 지급을 줄이고 특정한 시설투자과 같은 일정한 목적을 위한 용자보다는 시장논리에 의한 운영자금 및 시설자금 대출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1. 농업정책자금 운용 방향

90년대에 걸쳐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과 농특세, 축산발전기금 등을 재원으로 한 농업생산 기반 확충 및 구조개선사업이 마무리되어 가면서 농업부문의 정책자금의 운용 방향은 실제 영농에 소요되는 농업경영비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운영자금 지원, 금융비용 부담이 큰 농업경영체에 대한 부채대책성 자금 지원, 재해발생으로 인한 피해농가에 대한 재해복구비 지원, 그리고 농업인이 필요시 적기에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을 동시에 대출받을 수 있도록 정책자금 상시 지원체계를 갖춘 농업종합자금 지원 등으로 운용되어지고 있다.



조 병 은 차장
농협중앙회 농업금융부

2. 정책자금 대출과 관련된 최근 동향

위에서 설명한 정책자금의 운영방향이 신규시설 설치 또는 기반확충 등 하드웨어적인 장치시설 투자가 마무리되고 경영비 지원 및 농가가 보유한 금융부채에 대한 효율적인 대체를 위한 자금지원 등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으로 자금지원 방향이 전환되면서 정책자금 관련

농업부문의 정책자금의 운용 방향은 실제 영농에 소요되는 농업경영비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운영자금 지원, 금융비용 부담이 큰 농업경영체에 대한 부채대책성 자금 지원, 재해발생으로 인한 피해농가에 대한 재해복구비 지원, 그리고 농업인이 필요시 적기에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을 동시에 대출받을 수 있도록 정책자금 상시 지원체계를 갖춘 농업종합자금 지원 등으로 운용되어지고 있다.

정부의 시책도 일부 바뀌어지고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가. 농가 부채경감 대책 추진

90년대 과도한 시설투자, IMF로 인한 경영비 상승 등으로 인한 농가 경영악화로 인하여 당초 대출금의 상환이 어렵거나 파산지경에 도달한 농가의 회생을 돕기 위하여 99년, 2001년에 걸쳐 농가부채대책 자금으로 기존의

고금리자금을 저리자금으로 대체 지원하였으며, 2003년에는 일시적으로 경영이 어려운 농가에 대하여 경영체회생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나. 정책자금 대출금리 인하

2002년 7월 1일부터 기존의 농업정책자금 금리 5.0%에서 4.0%로 인하하였으며 부채대책관련 자문에 대하여는 추후 1.5%까지 금리를 인하할

예정이다.

다. 수입자유화에 대응한 각종 자금 지원 예상

FTA 등 수입개방으로 인한 특정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해당 산업의 경쟁력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자금이 많이 생겨나고 있으며 시설현대화 등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시설자금 지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도 한다.

3. 정책자금의 종류와 그 신청방법

양돈농가가 필요시 활용할 수 있는 정책자금의 종류와 그 신청방법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농업종합자금

1) 대상 :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기타 축산법 제2조에서 정하는 짐승, 가금, 유기축산업 등의 기반조성, 사육시설 및 장비 등

가) 기반시설 : 진입로, 목로, 용수, 전기시설 등

나) 사육시설 : 축사, 창고, 관리사, 조사료 생산장비, 사료분쇄기, 원유분석장비, 축산분뇨처리장비(축산분뇨처리 시설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기계·장비는 제외) 등

2) 용도

가) 시설자금 : 생산·양돈시설의 설치(증축 포함)에 소요되는 자금

나) 운영자금 : 사업의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가축입식비는 제외)

다) 개보수자금 : 기존시설의 개수·보완 또는 기계·장비구입에 소요되는 자금 등

3) 지원금액 : 소요금액의 100% 이내

4) 지원조건

가) 대출금리 : 4.0%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변동가능)

나) 대출기간 : 시설자금은 5년거치 10년상환, 개보수자금은 2년거치 3년상환, 운영자금은 2년 이내 일시상환

5) 신청방법

가) 대출취급기관 : 농협중앙회 시군지부 및 농·축협

나) 대출신청 : 연중 수시로 자금 필요시 신청가능하며, 각 대출취급사무소에 비취된 안 내장 또는 직원을 통하여 사업계획 수립 관련 상담 및 컨설팅 이용 등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사업계획서 서식 및 대출신청시 구비서류 등을 안내 받아 신청

다) 대출취급기관의 대출심사 : 대출취급기관은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 검토를 하고 대출 제한 여부, 경영능력, 재무구조 등에 대한 평가 및 영농수익성 추정, 소요자금 산정, 신용·담보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대출대상자 및 금액을 결정하여 자금을 지원

나. 축산경영자금

1) 의의 : 부업규모의 축산농가 및 법인·단체에 대하여 양돈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로 지원하고 있으며, 비교적 규모가 큰 양돈농가에 대하여는 농업종합자금을, 비교적 규모가 적은 농가에 대하여는 농축산경영자금을 지원

2) 용도 : 운영자금

3) 지원금액 : 농가당 대출잔액기준 1,000만원 이내에서 사육규모에 따라 지원금액을 결정

4) 지원조건 : 1년 일시상환 (1년 연장가능)

5) 신청방법

가) 대출취급기관 : 전국 지역축협 및 품목축협

나) 대출신청 : 대체로 3월초에 지역축협 단위로 자금이 배정되고 그 배정한도 내에서 축산계 또는 영농회 단위로 신청자 및 신청금액을 접수

다) 대출취급기관의 대출심사 : 영농회 또는 축산계에서 신청·접수한 자료를 토대로 읍·면·동 자협의회(축협단위 심의기구)를 개최하고 신청자별 대출금액 및 대출대상자를 결정

다. 재해대책자금

농·축산농가가 재해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추가 소요되는 경영비를 지원하여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자금

1) 지원대상자

시장·군수가 자연재해 및 기타사고(화재, 붕괴, 정전, 도난, 폐사 등)로 판정한 축산농가

2) 지원금액

피해두수에 대한 연간경영비의 50% 이내에서 농가당 1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내(법인의 경우 1억원 이내)

•대출기간 : 1년이내(1년 연장가능)

3) 신청방법

피해농가가 시장·군수에게 자금지원을 요청하고 시장·군수는 축협과 공동으로 피해조사를 실시한 후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농협중앙회에 신청

라. 축산후계자 육성자금

1) 지원대상자 : 시장·군수 등이 농어민후계자 육성대상자로 선발·확정한 농업인

2) 대출금리 : 4.0%(취농창업후계농업인 : 3.5%)

3) 대출기간 : 15년 (5년거치 10년상환)

4) 대출금액 : 1인당 20백만원~50백만원까지 차등 지원(취농창업후계농업인은 20백만원~80백만원까지)

5) 신청방법

가) 시·군 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선정 : 농업인후계자로 선정된 신규후계농업인 또는 취농창업후계농업인에 대하여는 농업기술센터의 심의·추천을 받아 시·군 또는 농업기술센터가 대상자 선정 및 지원액을 결정

나) 농·축협 : 시장·군수가 발급한 사업추진 계획(확인)서에 의하여 해당년도 지원자금을 대출

이상으로 양돈농가가 이용할 수 있는 정책자금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았는 바,

좀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현지의 농·축협 대출 사무소를 통하여 문의하시면

더욱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돈**